

# 2023년 <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> 장학생 선발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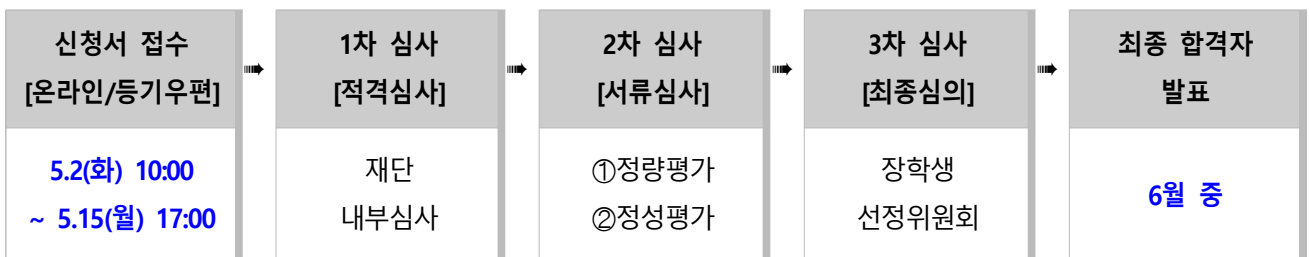
서울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4월 25일  
 (재)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## 1 선발 개요

- 사업명:**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
- 지원대상:**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(4대 ~ 6대) 후손인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(의 자녀)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
- 선발인원:** 총 120명
- 장학금:** 연간 3,000,000원 (150만원\*2회 분할 지급)
- 지원성격:** 학업장려금  
 ※ 2023년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 불가(국가장학금, 교내외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)

## 6. 선발절차



※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2 장학금 신청

### 1. 신청자격 (아래 가,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가. 독립유공자(순국선열, 애국지사)의 증손자녀 이하(4대 ~ 6대) 후손<sup>1)</sup>

나. 아래 ①,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 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
- ②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

#### 신청자격 상세설명

1. 독립유공자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**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**  
 \*독립유공자 외 **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, 전몰군경 등)는 선발 비대상**

2. 소속 대학의 '서울 소재' 여부는 [붙임2]의 자료(지원 대상 대학 명단) 참조  
 \***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함**

3. 정규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만 신청 가능

\*신청 비대상: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, 휴학생, 초과학기 재학생 등

\*신청 당시 정규학기(마지막 학기 제외) 재학중이나 2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

\*초과학기: '본전공'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

(예시) 수업연한이 4년(8학기)인 경우

- 이미 이수한 학기가 6학기이고, 당해학기가 7학기인 경우  
 : 당해학기 = 정규학기(7학기), 다음학기 = 정규학기(8학기)
- 이미 이수한 학기가 7학기이고, 당해학기가 8학기인 경우  
 : 당해학기 = 정규학기(8학기), 다음학기 = 초과학기(9학기)
- 이미 이수한 학기가 8학기이고, 당해학기가 9학기인 경우  
 : 당해학기 = 초과학기(9학기), 다음학기 = 초과학기(10학기)

### 2. 신청방법

가. 공 고 일: 2023. 4. 25.(화)

나. 신청기간: **2023. 5. 2.(화) 10:00 ~ 5. 15.(월) 17:00** (온라인 신청 기준)

다. 신청방법: **온라인 신청 후 서류 등기우편 제출** (이메일, 팩스 접수 불가)

※**등기우편은 신청 마감일(5.15) 소인분까지 인정**

라. 제 출 처: **(04130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, 2층(공덕동)**

서울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담당자 앞

마. 우편접수 확인방법: 재단 홈페이지 ▶ 마이페이지 ▶ 장학금 신청목록  
 (접수중 → **접수완료-심사중** 변경)

1) 4대 후손: 증손자녀, 5대 후손: 현손자녀, 6대 후손: 내손자녀

### 3. 제출서류 (등기우편 제출 필수)

| 구분   | 제출서류  | 발급처  |
|--|---|--|
| ①~③<br>공통서류  | ① 온라인 신청서(신청내역)<br>*출력 방법은 p.7 [참고자료]의 Q1 참조  | 재단 홈페이지<br>지정서식 다운로드<br><a href="http://www.hissf.or.kr">www.hissf.or.kr</a>       |
|  |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  |  |
|  | ③ 재학증명서   | 소속 대학  |
| ④~⑤<br>유족 확인서류   | ④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<br>⑤ 가족관계증명서<br>*유족 확인서류는 p.7~8 [참고자료]의 Q2, Q4 필수 참조<br>*후손 인정 범위: 증손자녀 이하(4대 ~ 6대 후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센터 방문<br>또는<br>정부24 홈페이지<br>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          |
| ⑥~⑦<br>자기소개서,<br>성적증명서   | ⑥ 자기소개서   | 재단 홈페이지<br>지정서식 다운로드<br><a href="http://www.hissf.or.kr">www.hissf.or.kr</a>       |
|  | ⑦ 성적증명서<br>*1학년 제출 생략(2학년 이상 제출 필수)   | 소속 대학  |
| ⑧<br>경제상황<br>증빙서류<br>(택1)  | Ⓐ 기초생활<br>수급자<br>· 수급자 증명서  | 주민센터 방문 또는<br>정부24 홈페이지<br>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             |
|  |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  |  |
|  | Ⓑ 법정<br>차상위계층<br>· 차상위계층 확인서<br>· 자활근로자 확인서<br>·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<br>↳ 비대상: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                  | 주민센터 방문 또는<br>복지로 홈페이지<br><a href="http://www.bokjiro.go.kr">www.bokjiro.go.kr</a> |
|  | ·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<br>↳ 비대상: 공고일(4.25) 전 자격 상실, 신청 종료일(5.15) 후 자격 취득   | 국민건강보험공단<br>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                     |
|  | Ⓒ 학자금<br>지원구간<br>통지서<br>· 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<br>↳ '성명, 생년월일, 신청학기, 학자금지원구간, 통지일자'가<br>확인되어야 함(개인 조화용 또는 열람용 화면 캡처본은 미인정) | 한국장학재단<br><a href="http://www.kosaf.go.kr">www.kosaf.go.kr</a>                     |
| ※경제상황 증빙서류 미제출 가능(단, 미제출시 소득 점수 최하점 부여)  |   |  |
| ⑨~⑩<br>추가서류<br>(해당자만 제출)   | ⑨ 제적등본<br>· 직계가족 증명서 발급 불가로 방계가족 증명서 제출시<br>· 가족관계증명서로 후손 확인이 어려운 경우<br>※ 제적등본 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필수<br>⑩ 주민등록등본(비서울 소재 대학 지원자)     | 주민센터 방문 또는<br>정부24 홈페이지<br>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             |
| <b>※ 서류 발급 인정기간: 2023. 4. 25(화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</b><br><b>※ 경제상황 증빙서류(⑧), 주민등록등본(⑩)은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</b><br>- 가족 인정 범위: 미혼 - 부모 / 기혼 - 배우자<br>- 가족 인정 범위 외 명의자(형제, 조부모 등)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|   |  |

#### 4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가. 장학금 신청 마감일(5.15(월) 17시)까지 **온라인 신청서를 수정, 삭제**할 수 있습니다.
- 나. **온라인 신청과 우편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심사 대상자로 확정**됩니다.
- 다. 심사 중 필요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- 마. 신청기간 이후 접수(방문접수 포함)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바.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은 취소되며,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
## 3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

### 1. 심사기준 및 방법

| 구분     |       | 세부 내용   | 비고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|        |      |  |   |
|-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|--------|------|--|---|
| 1단계    | 적격심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서류 접수 완료자 심사</li> <li>-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</li> <li>- 가구당 선발 및 지원 인원은 1인으로 제한</li> <li>- 재혼가정 등의 경우 친양자 입양된 자녀만 인정</li> <li>- 필요시 서류 보완사항에 대해 심사 기간 중 별도 안내하며, 기간 내 미보완시 부적격 처리함</li> </ul> </li> </ul>  | 등기우편 서류 미제출자 심사 제외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|        |      |  |   |
| 2단계    | 정량심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류심사 대상자 선발(선발 정원의 1.2배수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량평가를 통해 선발 정원(120명)의 1.2배수(144명)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발</li> <li>- 학년별 아래 기준에 따라 분리 심사 및 선발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선발 인원</th> <th>선발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학년</td> <td>36명</td> <td>소득기준(소득낮은순 선발)<br/>수급자·차상위 &gt;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<br/><b>*동순위자 발생 시 서류심사 대상자로 동시 선발</b></td> </tr> <tr> <td>2학년 이상</td> <td>108명</td> <td>소득(100점) 및 성적(100점)<br/>점수 총합 고득점자 순<br/><b>*동순위자 발생 시 동점자 심사기준 적용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1학년은 대학 성적 미보유로 동등한 기준으로서의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, 소득 기준만으로 선발 인원의 25%를 분리하여 심사·선발함.</p> | 구분                 | 선발 인원 | 선발기준 | 1학년 | 36명 | 소득기준(소득낮은순 선발)<br>수급자·차상위 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<br><b>*동순위자 발생 시 서류심사 대상자로 동시 선발</b> | 2학년 이상 | 108명 | 소득(100점) 및 성적(100점)<br>점수 총합 고득점자 순<br><b>*동순위자 발생 시 동점자 심사기준 적용</b> | <b>동점자 심사기준 (2학년 이상)</b><br>① 소득(낮은순)<br>② 성적(높은순)<br>③ 위 기준으로 동순위 시 동시 선발함 |
| 구분     | 선발 인원 | 선발기준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|        |      |  |   |
| 1학년    | 36명   | 소득기준(소득낮은순 선발)<br>수급자·차상위 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<br><b>*동순위자 발생 시 서류심사 대상자로 동시 선발</b>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|        |      |  |   |
| 2학년 이상 | 108명  | 소득(100점) 및 성적(100점)<br>점수 총합 고득점자 순<br><b>*동순위자 발생 시 동점자 심사기준 적용</b>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|        |      |  |   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
| 3단계            | 서류심사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위원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고득점자순 선발</li> <li>- 심사항목: 학업 및 자기성장의지(50점),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(40점), 장학생 활동의지(10점)</li> </ul> </li> </ul> | <b>동점자 심사기준</b><br>① 소득(낮은순)<br>② 성적(높은순)<br>③ 선정위원회 |
| 4단계            | 장학생 선정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 선발을 위한 종합 심의</li> </ul>   | 결과발표: 6월 중   |
| 심사<br>결격<br>기준 | 학사기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생, 초과 학기 재학생, 휴학생 등</li> <li>◦ 지원 비대상 대학 재학생, 대학원생 등</li> </ul>   |  |
|                | 서류 미비 등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등기우편 미접수자, 제출서류 미비자, 접수 기간 외 제출</li> <li>◦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, 미인정 서류, 허위 서류 제출</li> <li>◦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</li> <li>◦ 비공식 서류(개인 조회용 또는 열람용 등), 식별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  |

※지원자 현황 및 심사 운영 상황에 따라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적격 지원인원이 서류심사 대상인원(1.2배수) 미달시 정량심사 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

## 2. 최종 결과 발표: 6월 중 예정

# 4 장학금 지원기준

### 1. 지원기간: 선정연도(2023년) 내 지원(2개 학기)

### 2. 장학금 지급

가. 지급일정: 6월, 11월 예정(차년도 이월 불가)

나. 지급방법: 학생 계좌 지급

다. 지원성격: 학업장려금(등록금성 장학금 및 재단 외부 장학금과 중복수혜 허용)

※지급중단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지급 중단 혹은 환수 할 수 있음

### 3.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납

가. 23년 1, 2학기 대학교 미소속자(제적, 자퇴, 퇴학, 졸업 등)

나. 장학생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 또는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
다. 기타 허위 사실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
 (이 경우 지급 중단과 함께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)

## 5 장학생 활동

### 1.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(필수)

- 가. 진행시기: 7월 중 (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)
- 나. 진행방법: 실시간 온라인 진행 예정
- 다. 진행내용: 장학생 오리엔테이션(장학증서 수여,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활동 안내 등)

### 2. 지역사회 선순환 프로그램(봉사활동) (필수)

- 가. 진행시기: 7월~11월
- 나. 활동방법: 개인 및 단체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관련한 봉사활동 신청 및 참가
- 다. 주제선정: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(현충원 단체 봉사 등)
- 라. 기타사항: 활동 방법 및 세부 안내사항 공지 예정

### 3. 장학생 성장보고 (필수)

- 가. 진행시기: 9월~10월
- 나. 진행방법: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
- 다. 제출내용: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으로서의 사회 기여 및 공익적 활동 실천 성과, 학업 및 진로 활동 내용과 성과 등

### 4. 만족도 설문조사

- 가. 진행시기: 12월
- 나. 진행방법: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제출
- 다. 조사내용: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금 지원 전반 만족도, 개선요구 의견 등

#### 신청문의

☒ 홈페이지 Q&A 게시판: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([www.hissf.or.kr](http://www.hissf.or.kr)) > 소통공간 > Q&A > 묻고답하기  
 ☎ 유선문의: 02-725-2257, 070-8667-3559 (문의시간: 평일 9:00~12:00, 13:00~18:00)

- 붙임 1. 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신청서(양식) 1부.  
 2. 지원 대상 대학 명단 1부. 끝.

## [참고자료] 자주하는 질문

Q1) 장학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

A1) 장학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단계: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신청 내역 출력

[장학금 안내] > [대학생 장학금] > [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] > [장학금 신청] 클릭,  
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이 기재된 해당페이지를 인쇄하여 준비

| 신청 정보*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| 독립유공자2023  |
| 개인정보*   |            |
| 성명  | 생년월일       |
| 휴대전화  | 연락처(비상연락망) |
| <p>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시에는 장학금 심사 및 선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제상환(소속) 증빙서류, 가족관계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하여 장학금 심사·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학금 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서 등록, 마이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내용 수정 및 삭제 가능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서 정보 작성 오류, 서류미비, 장학금 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 및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|            |
|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인쇄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닫기"/>   |            |

- 2단계: 서류 구비(공고문 p.3에 기재된 서류)

- 3단계: 신청서류 일체 등기우편 발송

※등기우편은 신청 마감일(5.15) 소인분까지 인정

Q2) 독립유공자 후손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A2) <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> 서류에 제시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학생 본인이 직계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| 증명서류(제출서류)  |
|-----------------|---|
| 4대 후손<br>(증손자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(부모님 성명 표기)</li> <li>•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또는 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| 5대 후손<br>(현손자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(조부모님 성명 표기)</li> <li>•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 기준 발급본 1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| 6대 후손<br>(내손자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(증조부모님 성명 표기)</li> <li>• 가족관계증명서(조부모님 기준, 부모님 기준 발급본 각 1부(총 2부) 필요)</li> </ul> |

Q3)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는 해당 안되나요?

A3)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'독립유공자(애국지사, 순국선열)'의 후손분들이 장학금 신청대상입니다.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이 아닙니다.

Q4)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?

A4)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(직계 가족의 사망, 행방불명, 국외이주 등)에 있는 경우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단,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*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필수로 제출**해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|
| <b>대체 인정</b>  | ① 독립유공자 유족(손자녀)임이 확인 가능한 <b>국가보훈처 공문</b><br>② 독립유공자 유족(손자녀) 명의의 <b>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</b><br>③ 독립유공자 유족(손자녀)임을 확인하는 <b>국민신문고 답변서</b><br>※ 3대 후손(손자녀)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|
| <b>대체 불인정</b> | ① 신청인이 증손자녀 이하 후손임이 명시된 국가보훈처 공문 (반드시 손자녀 인정 공문+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필요)<br>② 독립유공자 유족증 및 훈장증 등<br>③ 제적등본과 증빙자료 상 생년월일, 이름 일치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<br>④ 기타 증빙자료(훈장, 사진, 기록 등)  |

Q5)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공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

A5) 지방보훈지청(서울지방보훈청 등)에 **독립유공자/유족 등록확인 공문**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, 공문 발급 시 **대상구분(애국지사, 순국선열), 보훈번호, 유공자/유족 성명, 생년월일, 독립유공자와의 관계, 등록일자**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

모두가 함께, 창립한 대한민국

**서울지방보훈청**

수신 귀하  
(경유)  
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

귀하께서 요청하신 故 님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실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| 대상 구분   | 보훈 번호 | 국가유공자 유족              |     |  | 적용대상 법조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국가유공자<br>성명<br>(생년월일) | 관계  | 국가유공자 유족<br>성명<br>(생년월일)<br>등록일<br>(사망일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순국선열 유족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손자녀 |  |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 |

끝

**Q6) 제적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?**

**A6)**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직계가족의 행방불명,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직계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**방계혈족의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만** 제출하는 **선택서류**입니다.

주민센터에서 **관계증명을 위한 제적등본** 발급을 요청하시고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으로 확인 가능한 **방계혈족과 신청자 본인**에 해당하는 **이름 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**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

**Q7) 선순위 유족도 아니고 외가 후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**A7)**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선순위유족 여부, 외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4대 ~ 6대 후손이시고,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장학금 지원은 학생 본인의 부모(1가구) 기준 1인만 가능합니다.

**Q8) 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?**

**A8)** **경제상황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 가능**합니다. 단, 경제사황 증빙서류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거나 기본점수가 부여되므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발에 불리합니다. **경제상황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선발에 유리**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Q9)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의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?**

**A9)**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재단 외부 장학과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단, 당해 연도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 간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.

**Q10)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**

**A10)** 대학의 성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성적증명서에 **백분위 점수, 담당자 성함, 담당자 연락처, 담당자 서명**을 수기로 기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**Q11) 편입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?**

**A11)** 기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,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. 신편입자로서 현재 대학의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,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